
미래교육원

신규 체험 콘텐츠 교체 제작 설치

과업지시서

2025. 11.

누리운영팀

1. 과업의 명칭

본 과업의 명칭은 「미래교육원 신규 체험 콘텐츠 교체 제작 및 설치」라 한다.

2. 과업의 목적

기존 미래교육원 체험콘텐츠를 업그레이드된 최근 트렌드와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콘텐츠 체험시설물로 교체

3. 과업범위

가. 위치 :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2-33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
나. 범위: 미래교육원 1층 체험누리 내 디지로그모험터

4. 과업기간: 착수일로부터 1개월

- 과업기간은 과업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상호간 협의하여 수행함

5. 소요예산 : 389,068,000원(부가세 별도)

4. 과업 세부 대상 및 구성안

| 대상 | 면적 | 공간 사진 | 구성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
| 디지로그모험터(미래비 밀요원) - 마지막 관문 방탈출 | 9170*2700 |  | 레이저빔 탈출 콘텐츠 신규 구축 |
| 디지로그모험터(미래비 밀요원) - 전기단자함 통로 | 약 6평 (사다리꼴) |  | 플라즈마 콘텐츠 추가 도입 |
| 디지로그모험터(미래비 밀요원) - 잠든 영웅을 구하라 | 6400*4000*3600 |  | 미래 의료기기 체험콘텐츠 신규 구축(기존 구조물 변경 활용 가능) |
| 디지로그모험터(미래비 밀요원) - 현실속으로 | 4600*3500*3500 |  | 미디어아트 및 이동동선(단순 체험) 신규 구축 |
| 디지로그모험터(미래해 양연구소) -해저엘리베이터 | 4000*3100*3600 |  | 벽면 및 바닥 미디어 콘텐츠 신규 구축 |

5. 주요 과업내용

| 구분 | 과업 내용 |
|--|---|
| <p>디지로그모험터 (미래비밀요원) - 마지막 관문 방탈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험객이 레이저빔을 피해 이동하는 콘텐츠 도입 ○ '미래비밀요원 탈출' 주제에 걸맞는 콘텐츠 및 공간 환경 구축 ○ 음성, 음향 효과와 벽면, 바닥 빔프로젝트 영상 적용 ○ 레이저빔에 닿을 경우 경고 사이렌, 음성 및 벽면, 바닥 빔프로젝트 영상, 조명 연출 등 이펙트 적용 ○ 레이저빔이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되는 조도 환경 구축과 레이저빔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적용 필요 |
| <p>디지로그모험터 (미래비밀요원) - 전기단자함 통과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플라즈마 체험콘텐츠 추가 도입 ○ 터치 시 반응 하는 다양한 플라즈마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되 체험 흥미도를 올릴 수 있는 콘텐츠 디자인 적용 구축 ○ 플라즈마가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되는 조도 환경 구축 |
| <p>디지로그모험터 (미래비밀요원) - 잠든 영웅을 구하라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래 의료기기 체험 콘텐츠 신규 도입 ○ 장기 등 기관, 팔 다리 등 인체를 재건하거나 병을 치료하는 미래 의료기기 콘텐츠 구축 ○ 체험객이 서서 들어가는 의료기기 콘텐츠를 제작(현재 전시물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) ○ 기기 안에서 터치 스크린을 통한 인체 재건 미션을 수행하는 콘텐츠 개발. 미션 완료시 조명, 음성 등으로 치료받는 효과 콘텐츠 적용 ○ 기존 체험 시스템과 호환 적용 필요 |
| <p>디지로그모험터 (미래비밀요원) - 현실속으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간 전체에 빔프로젝트 영상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적용과 이동 동선 또는 간단한 체험을 위한 구조물 구축 ○ 매트릭스(세로 녹색 코드), 기하학 모형 등 신비로운 입체 공간을 표현하는 영상 콘텐츠 도입(단순 패턴 반복 영상 충분. 조도 환경 고려 필요) ○ 영상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투명, 빛반사 소재를 이용한 이동동선 구성 또는 올라서기, 통과하기 등 단순한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물 구성 필요 |

디지로그모험터
(미래해양연구소)
-해저엘리베이터

- 깊은 해저로 내려간다는 주제에 걸맞는 콘텐츠 및 공간 환경 구축
- 바닥: 무한히 떨어지는 듯한 효과 적용을 위해 바닥 디스플레이 (인피니티 미러) 구축
- 벽면: 프로젝션 영상 등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심해 체험 콘텐츠 적용
- 나레이션, 효과음 등 음향 적용

※ 모든 시설 및 물품은 체험객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 필수

※ 체험객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 및 기술 적극 도입

※ 콘텐츠 체험 환경이 적절하도록 조도 구성, 혼음 방지를 고려

1. 일반사항

가. 본 사업은 **미래교육원 신규체험 콘텐츠교체 제작 및 설치**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대상자 준수사항 등에 적용하며, 이 일반 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법규, 기술수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.

나. 용어의 정리

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
- 1) "발주기관"이라 함은 당해 **미래교육원 신규체험 콘텐츠교체 제작 및 설치**를 발주한 「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수탁업체인 (주)이앤웍스」을 말한다
- 2) "과업수행자"라 함은 자격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- 3) "감독관"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임명한 설계 감독자를 말한다.
- 4) "실물모형"이란 체험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공간에 직접 제작한 것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.

2. 기본지침

가. 전시면적은 발주자와 협의가 가능하나, 예정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

나. 전시구성, 전시 기본방향,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제작·설치에 임하여 함

다. 전시품 제작·설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토대로 미래교육원의 특성화와 전시물 품질향상, 전시주제·전시내용·연출매체의 변화, 실물전시 적용, 최신 기술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전시 제작·설치

라.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, 정부가 제공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

마. 제작·설치·실물 구매는 각 단계별로 발주자의 승인받고 협의하여 시행

바. 체험 운영에 따른 작업 일정, 건물 내 전기, 수도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여 누락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및 협의 후 시공

사. 전시물과 관련되는 구조와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전시

물 설치 후에도 유지·보수·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설치

- 아.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자에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변경을 협의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예규를 따름
- 자.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, 본 지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

3. 세부지침

가. 공통사항

- 1) 모든 규격, 사양, 품질, 성능,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. 다만,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함
 - 2) 제작·설치 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 전 협의하여 대체를 요구할 수 있음
 - 3) 특수장비, 핵심부품,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,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,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
 - 4) 작동이나 체험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야 함
 - 5) 모든 전시관련 자료(영상비디오, 필름, 사진, 데이터, 그림, 실물 등)의 확보(촬영, 구매, 임대, 지급 등)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,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,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
 - 6) 모든 시설, 장비,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,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
- ①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(시험결과보고서)가

-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(반입 전·후)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함
- ② 제작·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함
 - ③ 재료 또는 제작·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
- 7) 추락, 파손,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·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
 - 8) 전시관 내부에 설치되는 교육실에는 영상상영을 위한 시스템등을 설치하며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
 - 9) 시운전 및 보증, 시설운전·관리안내서 작성,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
 - 10) 계약상대자는 전시물의 하자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
 - 11)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(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)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, 발주기관 요구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·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
 - 12)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하여야 함
 - 13)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류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,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. 아울러,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, 도난, 유실,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
 - 14)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

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·설치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함.
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자에서 제작·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

- 15)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물을 제작·설치하여야 함.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 및 재설치, 제작·설치 중지 명령,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
- 16)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,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음.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
- 17) 제작·설치 중 발생할 수 있는 건축시공자와의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인 업무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및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
- 18) 전기, 통신, 수도, 가스 등 제작·설치물 인계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 요금 및 사용요금 그리고 제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되, 내역서에 명기하여야 함
- 19)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제작·설치하여야 함
- 20) 전시물(작동전시물 및 관련시설 포함)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(단 SW의 경우 1년)으로 하며,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의 이행(하자)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- 21)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의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수탁업체에게 모든 권리가 위임되며 하자보수 등 업무에 충실히 대처해야 한다.

나. 분야별 세부사항

- 1) 전시시설

- ① 전시공간 내부의 마감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,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
- ②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, 운영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, 이에 대한 종합적·상시적·체계적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③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,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·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함
- ④ 전시공간 출입구 및 통로의 폭은 전시물의 이동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⑤ 전시공간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물 및 전시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함
- ⑥ 구조물 및 전시물의 점검구, 출입구는 입·출입이 용이하여야 함
- ⑦ 전시·체험물은 재질, 규격, 하중,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전시·체험물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.
- ⑧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전시물의 경우 전기용량, 하중, 급배수시설, 기타 특수 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검토후 진행하여야 함
- ⑨ 천장에 설치하는 전시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
- ⑩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관련 법류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설관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없도록 하여야 함
- ⑪ 전시유도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
- ⑫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,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
- ⑬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함
- ⑭ 기타 효율적인 전시공간 구축·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함

2) 전시물 및 작동체험물

- ① 작동체험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음,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며,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경, 동선,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공간배치를 하여야 함
- ② 모든 전시물과 작동체험물은 이동, 부분해체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규격화·모듈화하고, 전시·체험물과 전시대를 분리·제작·조립하여 기계·전자 장치만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③ 모든 전시물은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함
- ④ 모든 전시물은 실물과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거나 발주자 승인을 받은 제작도면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함
- ⑤ 전시물은 유지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되 특별히 점검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점검구를 두도록 하여야 함
- ⑥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함
- ⑦ 작동 기계장치는 전동 시스템을 원칙으로 구성하고 설계 연출사양에 맞게 작동 연출 되도록 구성하며, 관리가 용이하도록 작동장치부는 개폐되도록 제작함
- ⑧ 설치가 곤란하거나 가능한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풍구 또는 환풍기를 설치하여 구동장치의 과열을 방지함
- ⑨ 작동부는 부품의 교환 점검 등의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단일화 해야 함
- ⑩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동작부에는 진동흡수나 소음흡수 장치를 장착하여야 함
- ⑪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모든 전시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규격 또는 표준규격을 사용해야 함
- ⑫ 개별 전시물은 고정이 필요할 경우, 앙카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함

3) 전시영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

- ① 전시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,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,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
- ② 모든 전시영상 제작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,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제작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,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
- ③ 전시영상물은 영상하드웨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드웨어시스템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
- ④ 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제작영상물은 Full HD급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함
- ⑤ 영상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최신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,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모니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함
- ⑥ 관람자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음향장치 등을 통하여 전송되는 음성신호는 명료하게 하고, 각 전시공간의 특성에 맞는 근거리 간섭을 최소화하는 스피커를 설치하여 최적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
- ⑦ 각 전시품에 설치된 모든 모니터와 스피커가 주위의 세트 속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됨을 고려하고 음량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함
- ⑧ 각종 하드웨어 장비는 구매 전,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하며,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
- ⑨ 영상 하드웨어 및 컨트롤러는 전원을 꺼도 해당 프로그램은 항상 저장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정, 저장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
- ⑩ 각 전시 부스별로 제공되는 음향장치는 타 전시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도, 음량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함. 또한 설치외관이 타 전시물과 어울리도록 매입 및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, 전시물(전시매체)간의 음향도 상호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함
- ⑪ 자체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나 프로젝터를 매입 설치할 때는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하여야 함
- ⑫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나 스크린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

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,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연출 또는 간접채광의 조명 및 조도를 조정하여야 함. 단 주변 전시공간의 기본 조명과 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

- ⑬ 영상 및 음향 재생 장비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장비여야 하며, 제어 방식과 프로토콜이 제공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
- ⑭ 영상,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,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,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
- ⑮ 영상에 내레이션을 삽입할 시에는 음성정보 전달이 최적화되도록 하여야 함
- ⑯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, 구조상, 외관상, 관련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제작·설치하여야 하며,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확실하여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

4) 사인물

- ①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설치하되, 사인물의 인지성,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함
- ② 모든 전시 패널에 필요한 사진은 촬영, 구매, 임대, 지급 등으로 이루어 지며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,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, 분야별 전문가 자문, 전공자 검수,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
- ③ 전시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객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
- ④ 전시물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 이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함
- ⑤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계약상대자가 그 해당 내용에

대해서는 보증하여야 하며,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야 함. 또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,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

- ⑥ 전시물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
- ⑦ 계약상대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앞서 표준 크기의 실물대 모형을 현장에 설치하여 최종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·설치하여야 함
- ⑧ 전시사인의 내용은 발주자 승인 후 제작·설치하여야 함

6) 콘텐츠 제작·시연

- ① 전시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수정·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
- ② 콘텐츠는 관람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
- ③ 전시·체험물의 설명문은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설명문(안)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성하여야 함

8)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·운영계획

- ① 전시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·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,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야 함
- ② 전시·체험물의 모든 구성품(PC, 컨트롤러 등)의 위치, 사양 및 운용방법, 유지보수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함
- ③ 개별 전시·체험물의 모든 제어기기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통합관제가 가능한 형태로 적용하여야 함
- ④ 전시·체험물의 주요 배선 및 부품에 대한 태그를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배선도를 작성하여야 함
- ⑤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
- ⑥ 유지보수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

9) 저작권

- ① 전시관 구축에 사용되는 연출방법, 영상, 이미지 등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
- ② 제 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등으로 발주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, 그 책임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.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하며,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

Ⅲ

행정사항

1. 과업수행계획서 제출

- 가.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 -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
 - 과업 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
 - 사업비 소요명세서(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)
 -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(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)
 -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
- 나.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착수최종보고 등 정기보고를 회의 또는 서면 보고의 방식으로 실시해야 함
- 다. 보고회 개최 시에는 발표 자료 등 관련 자료를 감독관이 요청하는 일자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
- 라.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
- 마. 아울러, 보고회 이외에도 과업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,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

2. 과업의 변경 및 조정

-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

3. 보안사항

- 가.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
- 나.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
- 다.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발주처에 귀속됨

4. 성과품 제출

- 가. 완성 전시물, 설계도, 관리 매뉴얼, 최종결과보고서 제출
 - 완료계, 집행내역서, 설계도, 매뉴얼, 디자인, 사진, 콘텐츠, 프로그램 등 자료 일체(USB 포함 제출)
- 나. 계약완료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
- 다.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문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